

1. 개정이유

국가유공자 등이 발급받는 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등의 기재 사항 중 국가유공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,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‘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’를 추가

나. 국가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

– 독립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에 등록일자 추가

다. 국가유공자 본인 및 확인대상자에 대한 주소는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

라. 선순위자를 별도 분리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00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7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‘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’

별지 제5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4서식까지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) ② 영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(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),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각각 별지 제5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5호의5서식까지에 따른다. <u><신 설></u>	제17조(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 유족증 등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.

독립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

발급번호			
독립유공자	대상구분	보훈번호	훈격
	성명	생년월일	등록일자
선순위자	독립유공자와의 관계		성명
확 인 대상자	독립유공자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
용도 및 제출처 (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)	용도		제출처

위 확인대상자는 「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
직인

보훈지청장

유의사항

- ※ 이 확인서는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※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확인

우	주소	전화번호	모사전송번호
담당부서명	과장	주무	담당자
			전자우편주소

국가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

발급번호			
국가유공자	대상구분	보훈번호	훈격 또는 상이등급
	성명	생년월일	등록일자
선순위자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	성명
확 인 대상자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
용도 및 제출처 (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)	용도	제출처	

위 확인대상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의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
보 훈 지 청 장

직인

유의사항

- ※ 이 확인서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※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확인

우	주소	전화번호	모사전송번호
담당부서명	과장	주무	담당자
			전자우편주소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

발급번호			
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	대상구분	보훈번호	상이등급
	성명	생년월일	등록일자
선순위자	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의 관계		성명
확 인 대상자	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과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
용도 및 제출처 (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)	용도		제출처

위 확인대상자는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,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보훈지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- ※ 이 확인서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※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재할 수 있습니다.

확인				
우	주소		전화번호	모사전송번호
담당부서명	과장	주무	담당자	전자우편주소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